

전문병원제도 도입방향



글·허윤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의원실 정책보좌관

1. 전문병원 도입의 필요성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급성진료병상은 4.4~4.9 병상으로 OECD 국가의 중앙값인 3.2~3.7 병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병상가동률은 1999년 77.4%, 2000년 78.3%, 2001년 73.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의료기관 및 병상의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병원 도산율은 19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에 달하며, 2002년에는 상반기 기준 5.1%로 년 10.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병원의 도산율이 현저히 높고, 병상 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 도산율이 높게 나타나 중소병원 경

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병원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병원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전문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구분은 양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있을 뿐, 질적 기준에 따른 구분이 없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소병원의 전문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관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이 특수질환, 전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반질환에 관한 전문병원의 개념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양성화는 중소병원의 특성

화로 진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의료비 절감 및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집중화된 진료와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을 일년에 3~4건 시술하는 병원과 매일 여러 건 하는 병원의 경우 심장병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수준이 동일할 수 없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 이 전문병원은 전문의들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는 고도치료기술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II. 전문병원의 범주(안)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 질환, 진료과목, 신체부위, 또는 대상군 등 특정한 진료영역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수준의 고도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이라 할 수 있다.

전문병원의 구비조건으로는 특정 전문과 또는

특정진료 분야의 환자수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 점유 또는 점유할 수 있는 인력구성 및 시설을 구비하고, 2개 과목 표방의 경우 특정 환자가 70% 이상 점유 또는 점유할 수 있는 인력구성 및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는 환자 구성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병원의 진료수준 및 가산율은 3차 진료기관 인정기준에 준하는 특정 전문과 전문의 및 환자수를 비율로 하고, 가산율은 해당 전문과목에 한하여 종합병원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에 표방하고 있던 전문병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는 신청 시점 이전 1년간 실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규의 경우는 6개월간의 실적 적용과 점유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기준 구성요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 의 등 기타인력은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기준을 적용하고, 시설·장비는 각 전문과목별로 레지던트 수련병원 인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III. 전문병원 도입방안 및 문제점(안)

전문병원의 도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먼저 법개정 없이 하위법규의 개정만으로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은, 하위법에 규정을 두는 것에 이론상 문제가 있으며 현행법체계 안에서 인력 등 기준 설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은 전문병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한다.

양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법체계 안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전문병원에 대한 인력 등 기준설정에 있어, 법체계상 질적 기준을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법체계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법률상 규정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논의되는 전문병원 도입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병원은 의료기관이 시설, 장비, 인력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전문분야 환자의 구성비나, 치료성공률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시설, 장비, 인력기준 등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여부에 대한 판단과 수가를 반영하는 형태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전문요양기관 근거규정 및 인정기준이 있어, 현행 법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부적인 내용을 새롭게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금 용자 등의 예산지원이나, 선택진료 및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표방하고자 하는 전문과목이나 전문진료분야의 기관가산을 적용도 검토되어야 하며, 전문병원과 개방병원의 표시를 인정하여 전문개원의들이 전문병원의 유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으로 명칭을

인정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본고에서는 표준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과 고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센터의 개념까지 혼용하여 전문병원의 범주에 두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문병원이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법령의 개정은 양자를 고려한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전문병원의 도입으로 인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국가적으로 의료시장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들의 차별화된 진료영역으로의 집중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인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